

	논문편집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16
		제정일자	1992.12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7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들의 연구기능과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안산대학교 논문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논문청탁 및 편수의 결정과 배정
2.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
3. 논문의 편집
4. 기타 논문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발행) 논문집의 발행인은 총장으로 하고 발행은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한다.

제8조(심사위촉) ①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은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분야와 관련하여 추천한 동일전공분야, 전임교원이상의 외부심사위원 3인중에서 편집위원장이 무작위로 1인을 선정하여 위촉한다.

② 위촉된 외부심사위원(1인)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C등급 이하를 받은 논문은 교내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다.

③ 특성화사업, 국내외 연수 및 연구학기규정에 의거 수행된 연구실적물(논문)은 외부심사를 생략한다.

제9조(기타) ① 논문의 분량은 대학 논문집의 20page 이내로 한다.

② 원고의 교정은 원칙적으로 투고자에게 책임이 있다.

③ 논문별쇄를 희망하는 자는 그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.

④ 특수인쇄 등으로 별도의 경비가 소요될 때에는 그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2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 년 5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 년 9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